

「부산항 도선사의 승선·하선구역 운영세칙」 개정 고시 검토

□ 개정 이유

- 「부산항 도선사의 승선·하선구역 운영세칙」은 2015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, 명확하지 않은 문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으며,
- 변화된 항만 여건을 반영하고, 현장 상황에 맞는 승·하선 구역 운영을 위하여 현 규정 개정 필요

□ 주요 내용

- 도선사의 승·하선 구역 외 승·하선 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추가(제3조의2 신설)
 - 조선소에 입·출항하는 경우, 선박의 특성상 승·하선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, 긴급한 경우 등 필요시 지정된 승·하선 구역 외 구역에서 도선사가 승·하선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
- 도선사의 승·하선구역 위치 및 좌표 조정(별표1~4 개정)
 - 감천항 남방파제 준공 이후 변화된 항만 여건을 반영하여 감천항 도선사의 하선구역 조정 및 실제 운영하는 구역과 규정상 좌표가 일치하지 않는 구역의 좌표 조정
- 신항의 기상악화시 도선사의 하선구역 신설(별표3 개정)
 - 신항 구역 내 기상악화시 도선사의 하선구역을 신설하여 도선사의 안전 하선 도모

□ 추진 경과

- 「부산항 도선사의 승선·하선구역 운영 세칙」 개정 수요*조사('23.04.26)
 - * 부산(신)항VTS, 부산항만공사, 부산항도선사회,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,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,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지회,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, 한국해운대리점협회
- 운영세칙 개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('23.06.09)
- 일부 개정(안)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('23.07.03)
-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의뢰('23.08.16) 및 규제심사비대상 회신('23.08.22, 국무조정실)
- 세칙 개정 행정예고('23.08.22 ~ 09.11 / 우리청 홈페이지 공고)
- 우리청 행정규칙 자체 법제심사('23.09.14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고시 발령(우리청 홈페이지 공표, '23.09.20)
- 행정규칙(고시) 등재(사후심사) 요청(법제처 정부입법지원시스템, '23.09.20)